노인학대 바로알기

<신고의무자 대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CONTENTS

01 노인학대,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02 내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03 왜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05 체크리스트 및 선별도구

06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있나요?

07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08 학대피해노인 보호절차는?

09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10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11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

이에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교육 과정 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01 노인학대,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골절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할머니의 몸에는 상처가 가득하다.**
할머니는 웅크린 채 아무 말이 없고 며느리는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누군가
때리거나 꼬집은 상처로 보인다.

A 신고한다

B 신고하지 않는다

01 노인학대,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환겨울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악취가 나는 차가운 방안에 여름이불을 덮고 있다. 수급비는 알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상한 음식만 보이고 **돌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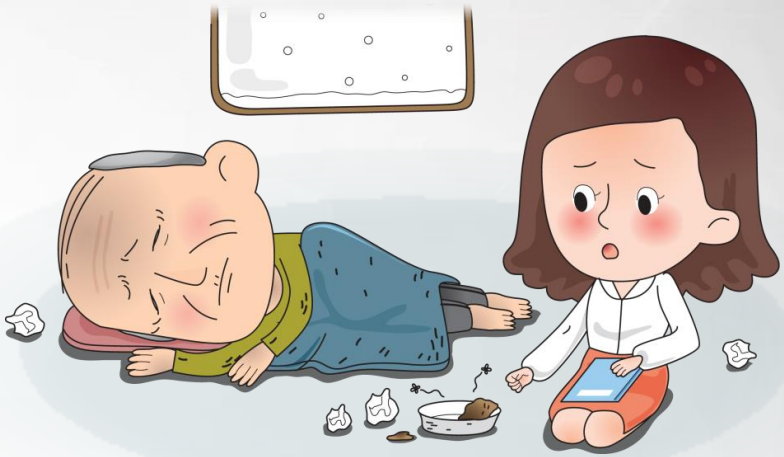

A 신고한다

B 신고하지 않는다

02 내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인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노인 관련업무)
-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119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02 내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정말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

위 조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03 왜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인권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인권감수성"

- 인권이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와 권리 확보 필요
-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존중' ➡ 나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 존중 필요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피해노인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학대피해노인을 도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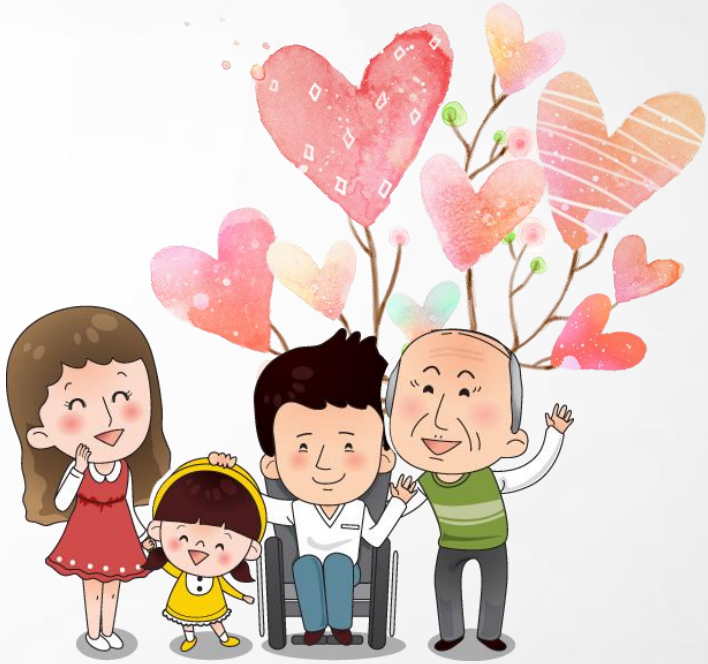

03 왜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노인인권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1577-1389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미래 당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주세요.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뿐만 아니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 학대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노인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행태적 분류

1/신체적학대

2/정서적학대

3/성적학대

4/경제적학대

5/방임

6/유기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치매초기 증상으로 의처증이 있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폭력을 행사하고 밖에서 방문을 잠가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대표적 행위

-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림
- 제한된 공간에 가둠, 거주지출입 통제
- 신체를 강제로 억압
-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
-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 식사, 음료 등 단절시킴
-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임
- 원치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일(노동) 강요

예측징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바깥출입이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서 배회함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신체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큰아들부부와 함께 생활하였다. 며느리는 할머니 면전에서 "노인네 돈은 안 벌면서 밥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병원비며 약값이며 감당이 안 된다"며 수시로 눈치를 주었다.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신체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대표적 행위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함
- 말을 걸지 않고 대화 하지 않음
- 일상생활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함
- 지인 및 가족과의 사회활동, 연락 등 방해
-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ex. 죽이겠다, 시설로 보내버린다, 집에서 나가라 등)
- 고함, 욕설, 모욕
- 자존심을상하게하거나창피수치심을느끼게함
-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킴

예측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 다툼, 욕설, 큰소리가 자주 들림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할머니는 독거노인으로 부양할 사람이 없이 홀로 살고 있다. 이웃에 사는 A는 할머니를 도와준다며 할머니 집에 자주 출입하였으며, 밤늦은 시간에도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 할머니의 몸을 더듬고 성추행을 하였다.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대표적 행위

- 강제적인 성관계나 강요, 시도
-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 일부를 만짐
-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노인의 성적부위를 노출하여 옷·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시킴
-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 학대행위자의 성적행위나 음란물을 보게 함

예측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방임 | 유기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외지에서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고향으로 내려와 노부와 살게 된 아들은 상습적으로 노부에게 금품을 가로챘고, 노부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등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방임 | 유기

대표적 행위

-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공적 부조 급여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
- 빌린 돈 및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
- 노동에 대한 대가 미지급
- 허락 없이 신용·명의 도용하여 이익을 취함
-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 날조
- 부양 전제의 재산상속 약속 및 증여 후 부양 의무 미이행
-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

예측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음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유기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빈번한 가정폭력으로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은 모두 집을 떠나고 막내아들만이 남아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나 중풍에 걸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막내아들은 인과응보라며 의식주 제공을 비롯한 부양을 거부하였다.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유기

대표적 행위

<방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 방치
-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함
- 안정된 주거공간 제공하지 않음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지원 하지 않음
-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 혹은 소홀히 함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ex.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음

예측징후

<방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 노인 주변 환경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 증후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환경
-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 기본적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유기

대표적 행위

<자기방임>

- 노인이 처치 및 약 복용 등 의료적 치료행위 거부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음
- 노인이 돌봄을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음
- 알코올·약물 남용 및 자살시도

예측징후

<자기방임>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를 노인 스스로 함
- 자살을 시도함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부와 함께 생활하던 아들은 형편이 어려워지자 치매에 걸린 노부를 여름 휴가지에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길을 헤매던 노부는 경찰의 도움으로 집을 찾을 수 있었지만 아들은 노부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모시기를 거부하였다.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대표적 행위

- 노인과 연락, 왕래 두절
- 노인을 시설·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 왕래 두절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 거부

예측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Q&A

다음 행위는 노인학대 유형 중 무엇일까요?

Q 1 노인의 허락 없이 신용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A. 경제적 학대

Q 2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한다. A. 신체적 학대

Q 3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A. 방임

Q 4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A. 정서적 학대

Q 5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 A. 성적 학대

Q 6 노인이 의료적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A. 자기방임

Q 7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A. 유기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노인학대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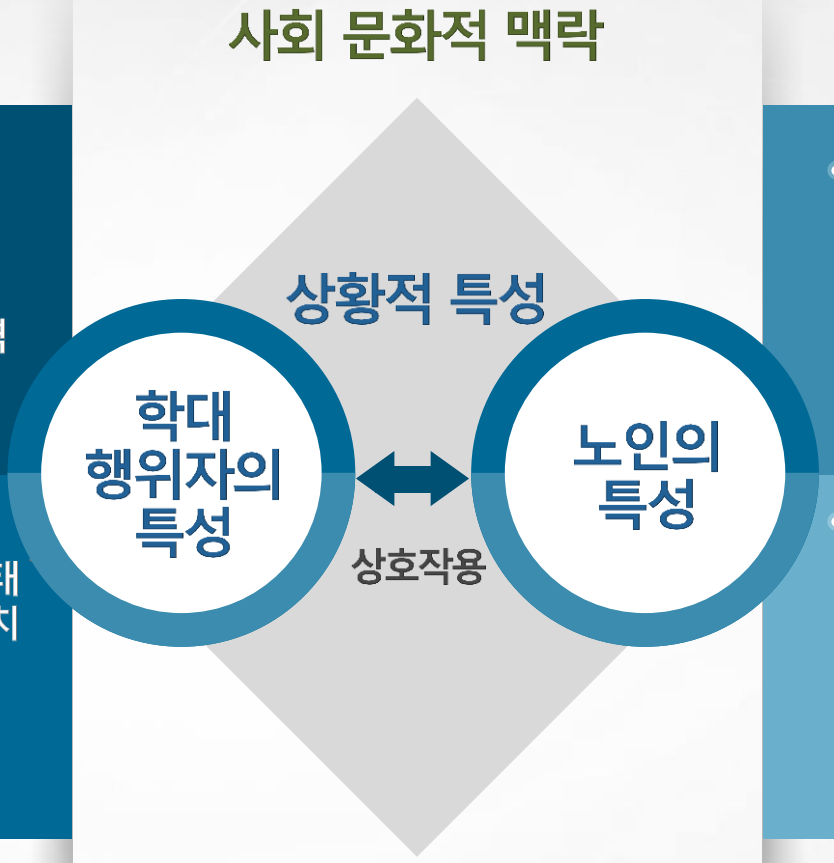

- **학대행위자 특성요인**

  40~50대가 주로 많음
  경제적 어려움
  비평적이고 참지못하는 성격
  스트레스와 부담감
  부양경험 부족

- **상황적요인**

  노인과 학대행위자 동거 상태
  부양부담과 기대 수준 불일치
  가족기능 저하
  가족결속력 약화
  가족의 고립됨
  가족 지원 체계 없음

- **노인(피해자)의 특성 요인**

  연령이 높음
  건강이 나쁨
  의존성이 높음
  고립됨
  지나친 관대함 또는 기대 높음

- **사회·문화적 요인**

  노인차별 문화
  강한 가족주의
  사회제도 및 서비스의 부족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학대피해노인의 피해사항

신체적 피해

학대피해노인 5명 중 1명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함

정서적 피해

우울, 불안, 공포, 분노 등 잦은 정서적 피해를 경험함

경제적 피해

학대피해노인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피해의 심각성으로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답변함

노인학대 특성

01 지속성

오랜 기간 동안 노인학대 있어왔음

02 복합성

가족 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 존재함

03 반복성

노인학대는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함

04 은폐성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노인학대 현황*

연도별 신고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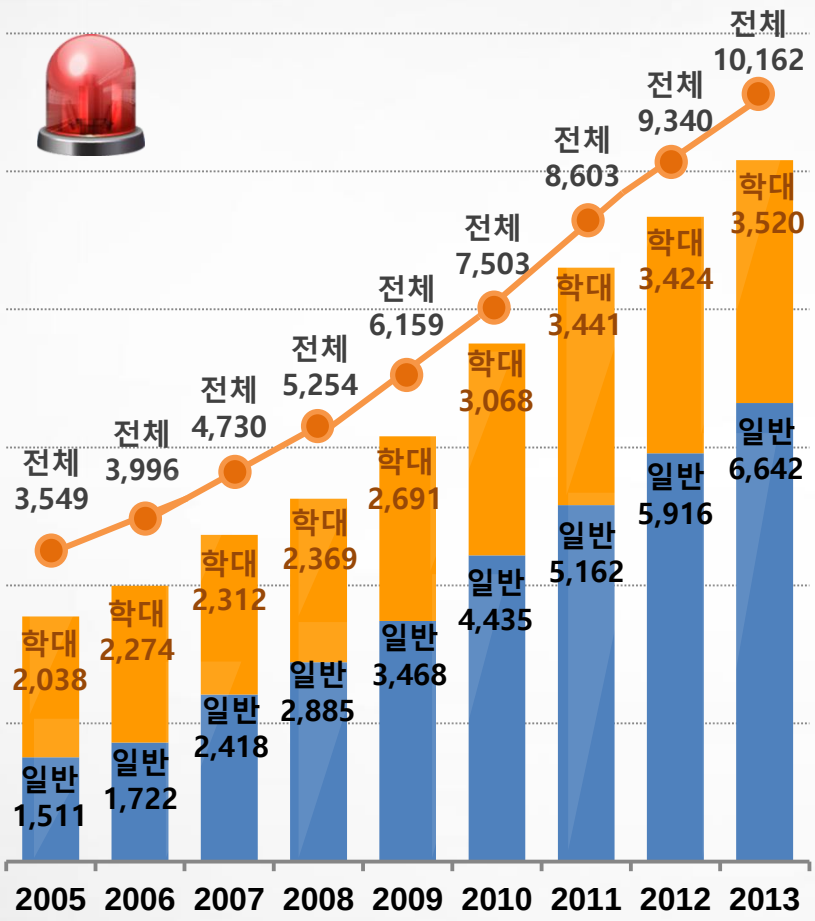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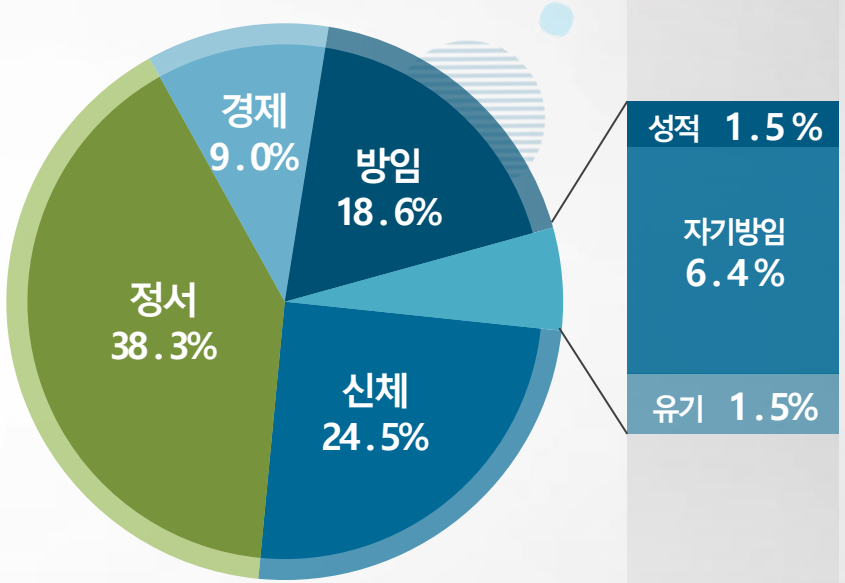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노인학대 현황*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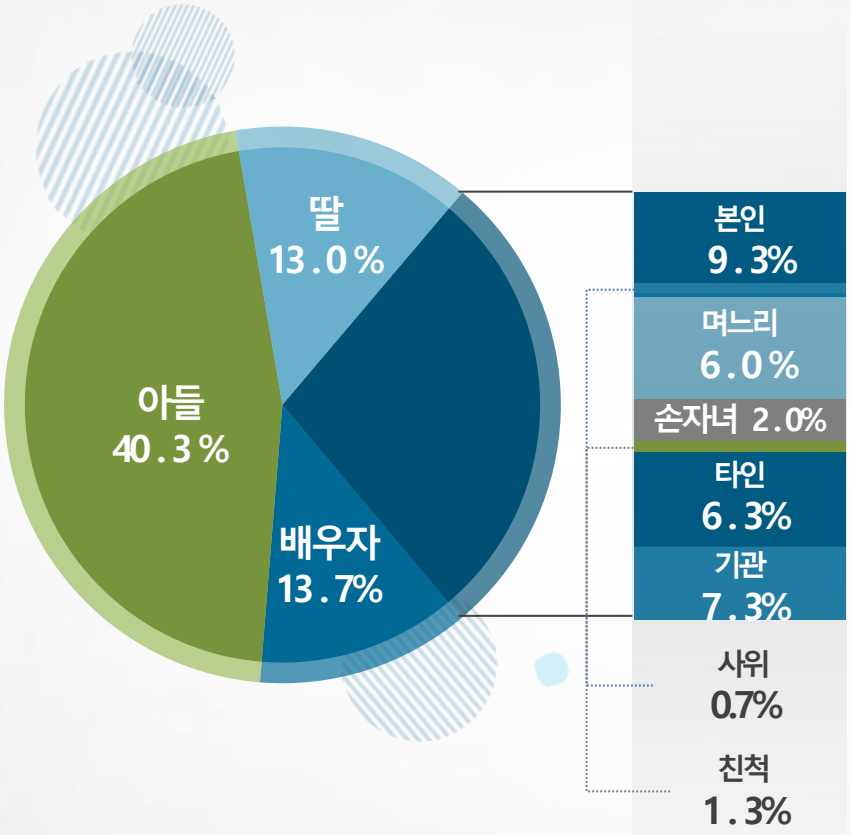

신고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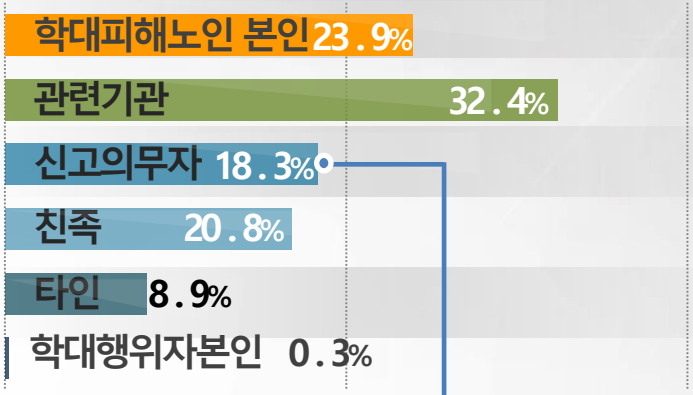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구급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소계
43	207	0	66	263	24	6	36	0	645 (건)
7.2	32.1	0.0	10.2	40.8	3.7	0.9	5.6	0	100.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노인학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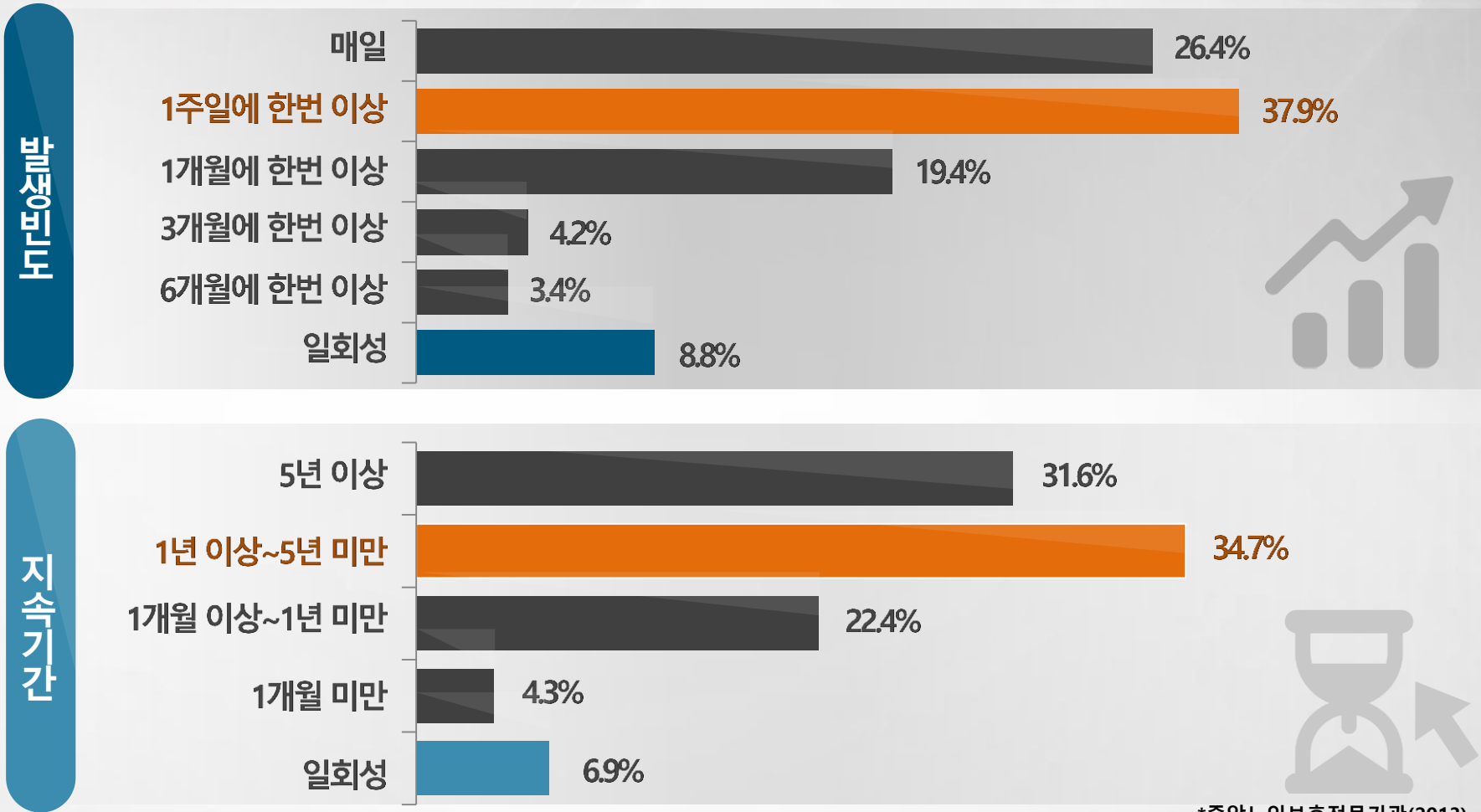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 하나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질병 유형의 건수는 3,070건
  - 관절염 611건(19.9%), 고혈압 573건(18.7%) 당뇨병 385건(11.7%)등 주로 노인성 질환

학대피해노인의 치매정도(연도별 추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학대사례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치매 정도	치매의증	157	159	174	248	264	386	389	452	459
	치매진단	47	56	102	126	135	191	233	330	372
	계	204	215	276	374	399	577	622	782	831
학대사례 대비 치매비율		10.0	9.5	11.9	15.8	14.9	18.8	18.1	22.8	23.6

-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도 급격히 증가
- 치매노인의 증가와 함께 치매를 가지고 있는 학대피해노인도 증가추이
  - (2005년) 204건 → (2013년) 831건 으로 **4배 이상** 증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04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구분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체장애	지체장애	134	70
		24.3	16.8
	뇌병변장애	81	22
		14.7	5.3
	시각장애	71	29
		12.9	7.0
	청각장애	58	23
		10.5	5.5
	언어장애	15	5
		2.7	1.2
	안면장애	1	1
		0.2	0.2
	신장장애	6	0
		1.1	0.0
	심장장애	5	1
		0.9	0.2
	간장애	1	1
		0.2	0.2
	호흡기장애	10	2
		1.8	0.5
	장루요루장애	2	4
		0.4	1.0
	간질장애	6	6
		1.1	1.4
	소계	**390**	**164**
		70.8	**39.4**
정신장애	지적장애	29	35
		5.3	8.4
	자폐성장애	1	2
		0.2	0.5
	반사회적 인격장애	3	29
		0.5	7.0
	정신분열	32	79
		5.8	19.0
	정동장애	4	16
		0.7	3.8
	우울장애	92	91
		16.7	21.9
	소계	**161**	**252**
		29.2	**60.6**
계		551	416
		100.0	100.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05 체크리스트 및 선별도구 : 학대유형 및 피해상황**

학대 유형 및 정도	□신체적 학대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퀌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뺌(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언어· 정서적 학대	□무관심 □소리지름 □비하된 언어 □이유없는 짜증과 화 □심한 욕설 □대꾸 안 함 □무시 □모멸감 □고의적 따돌림 □언어적 협박 및 위협 □흉기 위협 □과대한 요구 □생활기구 제한 □기물파손 □물건던짐 □사회적활동 제한 □사용공간 제한 □생활기구 사용 제한 □쫓아냄 □집 못 들어오게 함 □나가지 못하게 함 □기타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기타
학대 유형 및 정도	□경제적 학대	□인감도용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강제적인 명의변경 □부양전제 증여 후 부양 의무 불이행 □현금갈취 □동산갈취 □부동산갈취 □재산권사용제한 □유언장 허위 작성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 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기타
	□방임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하는 상황) □보장기구(보청기, 당뇨체크기구등)제공거부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비위생 거주 환경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난방 단절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영양실조 □탈수상태 □연락두절 □왕래두절(1년이상) □노인의 배회 □신변 위험 상태 방치 □죽게 내버려 둠 □가출 후 찾지 않음 □기타
	□자기방임	□의도적으로 신변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care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의료적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사망 □기타
	□유기	□ 노인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려짐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발생 빈도		□거의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1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일회성 □기타
학대 기간		□10년 이상 □5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6개월이상 □1개월 이상 □1주이상 □1주미만 □일회성
발생 장소		□가정내 □생활시설 □병원 □사회복지기관 □공공장소 □기타
발생 주소		(도, 시) (시, 군, 구) (동, 읍, 면)
학 대 발생 요인	피해자 요인	□인성문제 □정신질환 □실직 □알콜 문제 □약물 문제 □경제적 의존성 □스트레스 □신체질환 및 장애 □사회적 고립 □부부갈등
	학대행위자 요인	□신체적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 □인성문제 □정신질환 □알콜 중독 □약물 중독 □과거 행위에 대한 가족들의 분노 □경제적기여 상실 □스트레스 □폭력행위 □사회적 고립
	가족-환경요인	□학대행위자-피해자 갈등 □가족 갈등 □자녀 간 갈등 □형제·친족간 갈등 □재산관련 갈등 □원치 않는 피해자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 많은 피해자 부양 □학대행위자 및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기타	□특성없음 □파악안됨 □기타

***보건복지부(2004).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05 체크리스트 및 선별도구 : 노인학대 사례 스크리닝 척도***

신고접수번호	

담당자/작성자명		작 성 일 자	20 년 월 일
학대피해노인 성별	□남 □여	학대피해노인 연령	세

영 역	지표	없음	있음	비고
학대피해노인 특성	즉각적인 의료조치 또는 분리보호가 필요하다.	0	3	
	학대로 판정할 가능성이 크다.	0	1	
	학대로부터 피신 중이다.	0	1	
	노인이 신체적으로 취약하다	0	1	
	노인이 정신적으로 취약하다	0	1	
	노인이 학대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다.	0	1	
	노인의 모습이나 생활환경이 불결하다.	0	1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행위자를 두려워한다.	0	1	
	학대행위자가 정신적으로 취약하다.	0	1	
	학대행위자가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	0	2	
가족 특성	가족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0	1	
	가족과 단절되어 있다.	0	1	
노인학대 실태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준다.	0	1	
	노인에게 위협을 한다.	0	1	
	노인에게 폭력을 가한다.	0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한다.	0	1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다.	0	1	
	노인이 버려져 있다.	0	2	
	노인이 방치되어 있다.	0	2	
합 계		_____ 점		

사정결과	□응급(17점 이상) □비응급(8~16점) □잠재적(4~7점) □일반(3점 이하)				
학대 심각성	매우 심각하다	대체로 심각한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5	□4	□3	□2	□1
특이사항					
접수판정	□응급학대 □비응급학대 □잠재적학대 □일반사례				
상담원 소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2) 노인학대 사례 스크리닝척도 개발

06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있나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 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06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있나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

07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 신고할 때는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및 주요정보에 대해 설명

신고자 비밀보장은 되나요?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3항』
- 제 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인복지법제57조』

08 학대피해노인 보호절차는?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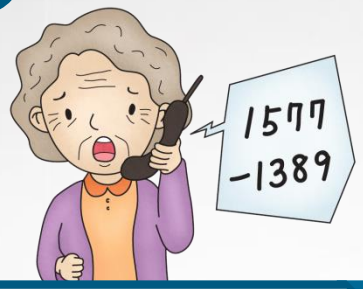

신고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
(24시간 상담)

02

접수

학대관련 피해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파악

03

현장방문조사

학대피해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04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05

서비스 제공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

06

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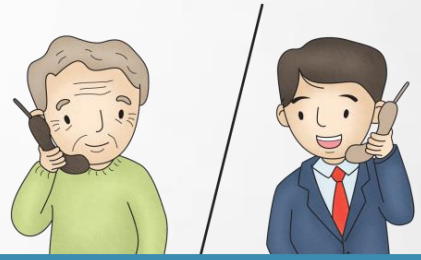

사후관리

종결 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학대 재발 방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09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업무 실시

교육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 인권 교육

홍보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
이동상담실시
언론홍보, 학술행사
캠페인, 사진전

상담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전문상담서비스
일시보호
의료지원
법률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 구축사업
자문위원회,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후원, 자원봉사 사업

노인인권 보호

노인인권 보호사업
노인인식개선사업
효행교육

09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응급상황의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Business

사업내용

01 학대피해노인 긴급 보호 및 의식주 제공(보호기간 3개월 외 1개월 이내 연장)

02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03 학대 재발 방지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해 학대행위자 등 가족상담서비스 제공

04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진행

10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의료인의 역할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면?

01 학대로 인한 손상과 후유증의 진단 및 치료로 더 이상 심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

02 노인학대 판정 등을 위한 정확한 의학적 평가 시행, 증거물 및 기록 남김

- 건강진단의 기준, 상처의 형태, 수, 크기, 치료정도, 원인
- 관찰된 행동과 심리적 상태
- 상처가 발생한 장소 및 원인
- 노인 및 보호자의 상처 발생에 대한 설명과 적절성 판단
- 임상결과와 사진 및 검사도구를 통한 결과지
- 진술된 내용의 녹음 및 녹취

03 노인학대로 의심되면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신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01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 참여

02 필요한 경우, 학대사례에 대한 증거자료 제공 및 증언 등 노인학대 문제해결 협조

10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종사자의 역할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면?

01 학대행위 목격 시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02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03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01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 참여

02 노인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

03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

10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무원의 역할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면?

01 학대행위 목격 시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0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또는 보호자 신분조회 요청에 적극 협조

03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게 제공가능한 정부의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노인학대 경험 및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0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조치 의뢰 시 필요한 조치 지원

02 관할지역내 노인보호시설에서 노인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지원 및 협조

03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 참여

04 노인학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인학대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

10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119구급대원의 역할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면?

01 학대행위 목격 시 위급상황 조치 후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02 응급조치를 요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이송 조치

03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01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 참여

02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1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11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시도	전국기관	관할지역	전화번호
서울	중앙	www.noinboho.or.kr	02)3667-1389
	서울남부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02)3472-1389
	서울북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02)921-1389
부산	부산동부	중구, 서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강서구	051)468-8850 051)441-8359
	부산서부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기장군	051)867-9119
대구	대구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053)472-1389
인천	인천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구,강화군,옹진군	032)426-8792~4
광주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062)655-4155~7
대전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042)472-1389 042)472-1390
울산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052)265-1389 052)265-1380
경기	경기남부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 용인시(처인구,기흥구,수지구) 수원시(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이천시,광주시,안성시,하남시,의왕시,과천시,여주 주군,양평군	031)736-1389
	경기북부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의정부시,남양 양주시,파주시,구리시 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031)821-1461
	경기서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안양시(만안구,동안구) 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 평택시,시흥시,화성시,광명시,군포시,김포시,오산 산시	032)683-1389
강원	강원 (영서지방)	춘천시,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033)253-1389
	강원동부	속초시,강릉시,동해시,삼척시,태백시,고성군,양양 양군,정선군	033)655-1389

시도	전국기관	관할지역	전화번호
충북	충북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043)259-8120~2 8120~2
	충북북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043)846-1380~2 1380~2
충남	충남	천안시(동남구,서북구),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 ,논산시,계룡시,세종시 금산군,연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 태안군,당진군,	041)534-1389 041)534-9222
	충남남부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041)734-1389 041)734-1398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덕진구),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 ,김제시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 부안군	063)273-1389
	전북서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063)443-1389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여수시,광양시,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 보성군,장성군,장흥군,화순군	061)742-3071 061)753-1389
	전남서부	나주시,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영광군,함평군, 해남군,진도군,완도군,신안군	061)281-2391
경북	경북	포항시(남구,북구)경주시,영천시,경산시 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울진군,울릉군	054)248-1389
	경북서부	영주시,문경시,상주시,김천시,구미시,안동시 예천군,군위군,청송군,양양군,의성군,봉화군	054)655-1389 054)436-1390
경남	경남	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 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 함양군,거창군 합천군,창원시(진해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성산구, 구,의창구)	055)222-1389
	경남서부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055)754-1389
제주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064)757-3400

마무리하는 시간

NEWS

노인학대관련 최신기사

노인학대 현장 조사에 경찰 의무동행 추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4-10-29 17:21

신고의무자에 요양병원·돌봄서비스 종사자도 추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노인학대 사건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경찰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는 요양병원 종사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노인학대 사실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노인보호기관은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나 정부의 개정안을 통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의 지원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관서에 배치된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노인학대'도 추가된다.

노인 학대 피해자 조기 발견 차원에서 노인 학대 행위 신고의무 직종도 크게 늘린다. 이에 따라 의료인·노인복지상담원·장애인복지지설 종사자·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사회복지관 등 시설종사자·장기요양기관 종사자·119구급대원·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기존 8개 직군 뿐 아니라 ▲요양병원 종사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도 노인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216902

Silver Smil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신체·정신적 폭력…노인학대 벌금 두 배로

[중앙일보] 입력 2014.10.29 16:20 / 수정 2014.10.29 16:21

글자크기 + −

댓글보기 0 좋아요 공유하기 0 트윗 0

노인 학대한 경우 벌금이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앞으로 노인에게 신체·정신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착취·방임한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시설 종사자이거나 상습적으로 노인학대를 저지른 피의자는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종사자의 명단과 이력을 공표한다. 학대 여부를 판정할 '학대사례조사 판정위원회' 구성에서도 시설 내부인은 빼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규정을 아동학대 수준까지 강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인보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는 3520건으로 4년 전인 2009년(2647건)에서 32% 증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밖에도 저소득층 주택개량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2017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000명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김혜미 기자 create@joongang.co.kr

출처: http://artidejoins.com/news/artide/artide.asp?total_id=16264761&doc=olink|artide|default

Silver Smil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킴이가 되어 주세요.
1577-1389
노인학대신고전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